

#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관련 규정 추가
- 지하수 누수 등 부담금 감면 규정 미비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자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금 규제 제도 마련
- 현행 조례 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

## 주요내용

-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관련 법령 신설(안 제18조의2)
- 부담금 납입절차 관련 법령 변경(안 제19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04. 05. ~ 2022. 04. 25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##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8조의2(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)**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.  
누수량 = (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-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) ÷ 2

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수도시설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수도시설과장 김 종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도시설팀장 양 인식
	담당자 성명·전화	임 윤 의 (행정 2467)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<u>제18조의2(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)</u></p> <p>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.</p> <p>누수량 = (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-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) ÷ 2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9조(부담금 납입절차 등)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안산시 재무회계 규칙」 별지 제25-1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p>	<p>제19조(부담금 납입절차 등)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.</p>

#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1
--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8월 25일  
제 안 자 : 도시환경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지하수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누수량 산정에 필요한 대상기간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존 「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」에 규정된 수도요금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함.

## □ 주요골자

- “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” 을 “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4개월간의 평균사용량” 으로 수정.(안 제18 조의2제1항)

## **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의2제1항의 계산식 중 “3개월간의”를 “4개월간의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